

의안번호	2202835
의 퇴 인	안규백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D28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단서 조항 삭제로 보상금 지급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702억 3,400만원(연평균 740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	보상금	5,281	8,140	11,231	14,470	17,917	57,039	11,408
	의료지원(보훈병원)	4	6	9	12	15	46	9
	의료지원(위탁병원)	33	51	69	88	108	349	70
	교육지원	156	217	273	323	369	1,338	268
	대부지원	68	95	119	140	159	581	116
보상금 지급대상자 확대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56,364	58,975	61,704	64,561	67,541	309,145	61,829
	의료지원(위탁병원)	322	334	347	360	373	1,736	347
합계		62,228	67,818	73,752	79,954	86,482	370,234	74,0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됨	의무규정
2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 및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
2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최초 등록 기준으로 증손·고손 자녀까지 확대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의 사망자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중지되지 않고 증손·고손에게 승계되어 보상금의 추가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보상금 이외에도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 다양한 예우가 지원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추계에서는 제12조(보상금), 제15조(교육지원), 제17조(의료지원), 제18조(대부지원)를 추계하고 그 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제13조(사망일시금)의 경우 현행법은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증손·고손 자녀가 보상금을 받게 되면 직계비속의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게 됨. 따라서 사망일시금 지급 소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직계비속의 자녀 사망 시 지급해야 할 비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로 고려하지 않음
 -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6조(취업지원), 제19조(양로지원), 제20조(양육지원)는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크지 않아 본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는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유가족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로 지원대상이 증가하는 반면, 보상금 대상 확대(안 제12조제2항)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추가재정소요의 증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자료획득의 한계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제15조(교육지원)는 교육지원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의 승계대상이 되는 증손·고손도 제15조(교육지원)을 승계받는 손자녀로 해석하고 추계함
-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 및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3호)

(1) 보상금 추가지급

- 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최초 등록 기준으로 증손·고손 자녀까지 확대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의 사망자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중지되지 않고 증손·고손에게 승계되어 보상금의 추가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급대상) 개정안에 따라 사망 시 추가적으로 그 자녀에게 승계가 되는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사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손자녀 2,445명과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증손 120명 등 2,565명임

[표 2] 독립유공자 수급자(선순위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보상금 지급자					보상금 미지급 손자녀	합계
	소계	본인	처·자녀·자부	손자녀	증손 등		
인원수	6,444	5	3,874	2,445	120	2,483	8,927

주: 2024년 7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추계에서는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손자녀·증손 등의 연령별 현황에 ([표 3]) 통계청 연령별 남자 사망률¹⁾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산출
 - 이때, 이들 사망자 모두 증손·고손 등이 있다고 가정하였고, 사망자의 혼격현황을 알 수 없어 혼격별 인원은 [표 5]의 2024년 예산 기준 혼격별 인원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보상금 지급대상자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증손·고손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합 계
손자녀·증손 등	2	24	243	578	802	762	154	2,565

주: 2024년 7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1세별 현황)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표 4]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지급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독립유공자 손자녀·증손 등 사망에 따른 보상금 승계자 수 추정(누계)	256	376	496	610	721

주: [표 3]의 연령별 인원수에 통계청의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독립유공자 유족 혼격별 인원 현황

(단위: 명, %)

	건국훈장1~3등급	건국훈장4등급	건국훈장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합 계
인원	256	874	2,411	694	2,209	6,444
비중	4.0	13.5	37.4	10.8	34.3	100.0

주: 2024년 7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지급단가) 2024년 지급단가에 2020~2024년 연평균 증감률 4.6%를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와 같음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남녀 파악이 안되어 보수적으로 남자 사망률 적용하여 추계

[표 6]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월 지급단가 추이: 2020~2024년

(단위: 천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독립 유공자 훈격	건국훈장1~3등급	2,301	2,370	2,489	2,626	2,757	4.6
	건국훈장4등급	1,917	1,975	2,074	2,188	2,297	4.6
	건국훈장5등급	1,557	1,604	1,684	1,777	1,866	4.6
	건국포장	1,112	1,145	1,202	1,268	1,331	4.6
	대통령표창	743	765	803	847	889	4.6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확대되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 수에 보상금 월 지급단가를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70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지급대상 (명, a)	합계	256	376	496	610	721	-
	건국훈장1~3등급	10	15	20	24	29	-
	건국훈장4등급	36	53	69	85	101	-
	건국훈장5등급	95	139	183	227	267	-
	건국포장	28	41	55	67	79	-
	대통령표창	87	128	169	207	245	-
월 지급단가 (천원, b)	건국훈장1~3등급	3,017	3,156	3,302	3,455	3,615	-
	건국훈장4등급	2,514	2,630	2,752	2,879	3,012	-
	건국훈장5등급	2,042	2,137	2,236	2,340	2,448	-
	건국포장	1,456	1,523	1,593	1,666	1,743	-
	대통령표창	973	1,018	1,065	1,114	1,165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a×b×1 2)	합계	5,281	8,140	11,231	14,470	17,917	57,039
	건국훈장1~3등급	362	568	792	995	1,258	3,975
	건국훈장4등급	1,086	1,673	2,279	2,937	3,651	11,626
	건국훈장5등급	2,328	3,565	4,910	6,374	7,843	25,020
	건국포장	489	749	1,051	1,339	1,652	5,280
	대통령표창	1,016	1,564	2,160	2,767	3,425	10,9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의료지원(보훈병원)

□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어,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도 확대

[표 8]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보훈병원 추가지원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독립유공자 손자녀·증손 등 사망에 따른 보상금 승계자 수 추정(누계)	256	376	496	610	721

주: [표 4]와 같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진횟수는 20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평균 수진횟수²⁾를 활용하고, 진료단가는 2023년 진료단가 30,633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 7.53%를 적용하여 산정

[표 9]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대상인원(A, 명)	256	376	496	610	721	-
수진횟수(B, 회)	0.4	0.4	0.4	0.4	0.4	-
진료단가(C, 원)	38,087	40,955	44,039	47,355	50,921	-
추가재정소요(A×B×C, 백만원)	4	6	9	12	15	46

(3) 의료지원(위탁병원)

-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1명에게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의 60%를 지원함
- 독립유공자 손자녀·증손 등 사망에 따른 보상금 승계자 수에 일반 유족 기준 75세 이상 비율(58.5%)을 적용하여 위탁병원의 추가진료대상자 수를 산정

[표 10]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위탁병원 추가지원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독립유공자 손자녀·증손 등 사망에 따른 보상금 승계자 수 추정(누계)	256	376	496	610	721
75세 이상	150	220	290	357	4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수진횟수 0.4 = 진료연인원 35,856명 ÷ 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대상자 86,861명

- 2023년 유가족 60% 감면대상자 지원단가 및 수진횟수에 최근 3년간 지원단가 연평균 증감률 3.8%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지원단가를 추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표 11]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대상인원(A, 명)	150	220	290	357	422
수진횟수(B, 회)	8.7	8.7	8.7	8.7	8.7
진료단가(C, 원)	25,451	26,418	27,422	28,464	29,546
추가재정소요(A×B×C, 백만원)	33	51	69	88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교육지원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손자녀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지원대상) 개정안에 따른 추가 교육지원 승계인원은 보상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 등에 승계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자 중 손자녀와 증손 등 및 보상금 미지급 손자녀를 합한 5,048명³⁾에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남성기준)을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인원(승계대상)을 산출
 - 연도별 사망인원(승계인원)에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유족 8,928명 중 교육지원을 받은 유족 678명 비율 7.6%를 적용하여 지원대상자 수 추정

[표 12]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 승계인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망인원	981	1,370	1,711	2,016	2,287

3) 개정안에 따른 교육지원은 보상금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손자녀등의 자녀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자 중 손자녀와 증손 등 및 보상금 미지급 손자녀를 모두 포함

지원대상	75	104	130	153	174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교육지원 단가는 2024년 지원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 0.6%를 적용하여 산정

[표 13]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 단가 추이: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율
교육지원 단가	2.01	1.88	1.90	2.06	2.06	0.6

자료: 국가보훈부

[표 14]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 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증감율
교육지원 단가	2.08	2.09	2.1	2.11	2.12	0.6

자료: 국가보훈부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에 따라 교육지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3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5]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추가재정소요	156	217	273	323	369	1,338

자료: 국가보훈부

(5) 대부

- 현행법은 보상금 수급권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손자녀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지원대상) 개정안에 따른 추가 대부지원 승계인원은 보상금 지급자 중

손자녀와 증손 등 및 보상금 미지급 손자녀를 합한 5,048명⁴⁾에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남성기준)을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에 따른 승계인원을 산출

[표 16]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대부지원 승계인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망에 따른 승계인원	981	1,370	1,711	2,016	2,2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대부는 직접대부와 이차보전(위탁대부)으로 구분하며, 대부대상인 되는 국가유공자 중 대부를 받은 유공자 비율(최근 5년 평균)과 대부건수 당 지원단가(최근 5년 평균)를 적용함

[표 17]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에 따른 대부 지원 단가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유자금	직접대부 지원율	1.10%	1.10%	1.10%	1.10%	1.10%
	직접대부 지원단가	5.6	5.6	5.6	5.6	5.6
이차보전금	위탁대부 지원율	5.71%	5.71%	5.71%	5.71%	5.71%
	위탁대부 지원단가	7.7	7.7	7.7	7.7	7.7
	이차보전율	1.80%	1.80%	1.80%	1.80%	1.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에 의한 대부지원 증가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억 8,100만원으로 추계됨

4) 개정안에 따른 교육지원은 보상금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손자녀등의 자녀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자 중 손자녀와 증손 등 및 보상금 미지급 손자녀를 모두 포함

[표 18]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용자금	60	84	105	124	141	514
이차보전금	8	11	14	16	18	67
합계	68	95	119	140	159	5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상금 수급권 확대(안 제12조제2항)

(1) 보상금

- 현행법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 및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945년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하여 보상금 수급권자였을 경우 손자녀는 보상금 수급권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
- (지급대상)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 확대 대상자 수는 현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 중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2,483명임
 - 선순위 손자녀 이외에도 다른 손자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선순위 손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보상금 수급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기간 대상자 수는 2,483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산정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삭제
- (지급단가) 2024년 지급단가에 2020~2024년 연평균 증감률 4.6%를

적용하여 산출

- (추계결과) 보상금 수급권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3,091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9]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권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지급대상 (명, a)	합계	2,483	2,483	2,483	2,483	2,483	—
	건국훈장1~3등급	191	191	191	191	191	—
	건국훈장4등급	454	454	454	454	454	—
	건국훈장5등급	1,031	1,031	1,031	1,031	1,031	—
	건국포장	184	184	184	184	184	—
	대통령표창	623	623	623	623	623	—
월 지급단가 (천원, b)	건국훈장1~3등급	3,017	3,156	3,302	3,455	3,615	—
	건국훈장4등급	2,514	2,630	2,752	2,879	3,012	—
	건국훈장5등급	2,042	2,137	2,236	2,340	2,448	—
	건국포장	1,456	1,523	1,593	1,666	1,743	—
	대통령표창	973	1,018	1,065	1,114	1,165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a×b×12)	합계	56,364	58,975	61,704	64,561	67,541	309,145
	건국훈장1~3등급	6,915	7,234	7,568	7,919	8,286	37,922
	건국훈장4등급	13,696	14,328	14,993	15,685	16,409	75,111
	건국훈장5등급	25,264	26,439	27,664	28,950	30,287	138,604
	건국포장	3,215	3,363	3,517	3,679	3,849	17,623
	대통령표창	7,274	7,611	7,962	8,328	8,710	39,8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의료지원(위탁병원)

-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1명에게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의 60%를 지원함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 확대 대상자 수는 현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 중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2,483명 중 75세 이상 비율 58.5%를 적용

[표 20]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권 확대에 따른 위탁병원 추가지원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독립유공자 손자녀·중손 등 사망에 따른 보상금 승계자 수 추정(누계)	2,483	2,483	2,483	2,483	2,483
75세 이상	1,453	1,453	1,453	1,453	1,4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유가족 60% 감면대상자 지원단가 및 수진횟수에 최근 3년간 지원단가 연평균 증감률 3.8%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지원단가를 추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표 21]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권 확대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대상인원(A, 명)	1,453	1,453	1,453	1,453	1,453
수진횟수(B, 회)	8.7	8.7	8.7	8.7	8.7
진료단가(C, 원)	25,451	26,418	27,422	28,464	29,546
추가재정소요(A×B×C, 백만원)	322	334	347	360	3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단서 조항 삭제로 보상금 지급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702억 3,400만원(연평균 740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	보상금	5,281	8,140	11,231	14,470	17,917	57,039	11,408
	의료지원(보훈병원)	4	6	9	12	15	46	9
	의료지원(위탁병원)	33	51	69	88	108	349	70
	교육지원	156	217	273	323	369	1,338	268
	대부지원	68	95	119	140	159	581	116
보상금 지급대상자 확대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56,364	58,975	61,704	64,561	67,541	309,145	61,829
	의료지원(위탁병원)	322	334	347	360	373	1,736	347
합계		62,228	67,818	73,752	79,954	86,482	370,234	74,0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